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| 1802 |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6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“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”를 설치하고자 하며
- 기존의 시정 자문기구 조례인 「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함.
- 나.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라.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마.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바.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사.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38,000천원

○ 회의참석수당 : 31,200천원

- 전체회의 : 80,000원 × 1회 × 30명 : 2,400천원
- 분과위원회 : 80,000원 × 6개 분과 × 12회 × 5명 : 28,800천원

○ 포럼·토론회 개최 : 6,800천원

- 강사수당 : 300,000원 × 1명 × 6개 분과 : 1,800천원
- 자료 제작 등 : 5,000천원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10. 7. 12. ~ 7. 31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○ 현행조례(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)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 및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위해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한다.

1.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
2.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한 시정정책 진단
3.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위원은 학계인사, 전문직업인,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행정, 산업경제, 보건복지, 환경교통, 교육문화, 도시건설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특정사안이 2개 이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8조(자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,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.

제11조(해촉)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자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권오달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획담당 이경래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정삼 (행정 2803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(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)

-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-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정의 주요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문 및 연구·조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 법시행령」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안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연구·조사 활동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2.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 3. 기관·단체 등이 제안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. 시민편익 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시의원, 학계인사, 전문직업인,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 및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위해 안산시 시민 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2.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한 시정정책 진단 3.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학계인사, 전문직업인,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	<p>제7조(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, 산업경제, 보건복지, 환경교통, 교육문화, 도시건설 등 6개 분과 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특정사안이 2개 이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
<p>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자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8조(특별분과위원회) ① 특정사안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·검토가 요구되는 등,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</p> <p>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.</p>	<p>제9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10조(자문 등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일부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자가 분과위원회와 특별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</p>	<p>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,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〈삭 제〉</p>
<p>제11조(안전제출 및 자료협조) ①위원회의 위원과 시 산하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<p>제12조(해촉)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관·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	<p>제11조(해촉)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〈삭 제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p>제13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2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수당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,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·조사활동을 한 위원 2.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위원 3.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을 의뢰 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	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자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8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9. 2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□ 수정이유

- 소통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기능과 역할을 자문기능에 맞도록 하고,
-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추가하며,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민소통위원회 기능을 자문활동으로 제한함.(안 제2조)
-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로 규정함.(안 제3조2)
- 간사와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2조)
- 기관·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신분이 변동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2조)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2조 본문 중 “자문활동 등”을 “자문활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제2호 중 “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”를 “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회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제8조(원안 제9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원안 제11조)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관·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<u>자문활동 등을</u>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한 시정정책 진단</p> <p>3.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<u>자문활동을</u> ----- 1. (원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2.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</p> <p>3. ----- -----</p>
<p>제3조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의 2(위원회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15년 8월 31일로 한다.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8조(자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와 서기의 관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간사와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정한다.</p>
<p>제10조 (생략)</p>	<p>제9조 (원안 제10조와 같음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u>제11조(해촉)</u>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u>제10조(해촉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기관·단체의 입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</p> <p>2. ~ 4.(원안 1.~3.와 같음)</p>
<p><u>제12조 ~ 제14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1조 ~ 제13조 (원안 제12조 ~ 제14조와 같음)</u></p>